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발급기간	공고사유
1	이*연	2007.01.17.	2024. 2. 1. ~ 2025. 1. 31.	폐문부재
2	나*연	2007.01.02.	2024. 2. 1. ~ 2025. 1. 31.	폐문부재
3	정*연	2007.01.13.	2024. 2. 1. ~ 2025. 1. 31.	폐문부재

2. 공고기간 : 2024. 1. 15. ~ 2024. 1. 29. [14일간]

3.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4. 준비물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
- 2)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5cm×4.5cm)

5.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의 : 동탄3동 행정복지센터 (☎ 031-5189-4074)

2024년 1월 15일

동 탄 3 동

